

2014년 세법학 1부 수정표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278 하12	3백만원	5백만원
p.306 상8~10	문화접대비 한도 부분	Min[①②] ① 문화접대비 ② 일반접대비 한도액×10%
p.335 하12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Max[①, ②+③]을 말한다.
p.444 하8	(주)금성과 (주)화성은	(주)금성과 (주)화성, 거주자들은
p.697 하1~3	연금계좌세액공제액 [박스]	세액공제액 : Min[①, ②]×12% ① 연금계좌납입액 ② 연400만원
p.757 상3	분리과세[도표 과세방법]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p.810 상7 상8 상16 상21 상24	1) 양도차익 : ~ = 360,000,000원 2) 양도소득금액 : 360,000,000 - 360,000,000×10% = 324,000,000원 (3) 양도소득금액 : (1)+(2)=360,000,000원 ① 정윤아의 양도차익(부담부증여분) : 2억원 (채무액)-2억원×40% =120,000,000원 ③ 합계 : 220,000,000원	1) 양도차익 : ~ = 180,000,000원 2) 양도소득금액 : 180,000,000 - 180,000,000×10% = 162,000,000원 (3) 양도소득금액 : (1)+(2)=198,000,000원 ① 정윤아의 양도차익(부담부증여분) : 1.6억원(채무액)-1.6억원×40% =96,000,000원 ③ 합계 : 196,000,000원
p.864 상17 상19	(3) 채무 6. 증여세과세가액 (=)1,628,400,000	(3) 공과금 (-)6,600,000 6. 증여세과세가액 (=)1,621,800,000
p.888 상5 상12	개인 B에게 15억원에 양도하였다. ② 증여재산가액 : 10원-	개인 B에게 20억원에 양도하였다. ② 증여재산가액 : 10억원-
p.931 하3~4	② (50,000-10,000-19,000)10,000×30%	② (50,000-10,000-19,000)×20,000)3억원
p.958 하3 하1	$\frac{30,000,000 \times 130,000,000}{130,000,000 + 70,000,000}$ = 19,500,000원 $\frac{30,000,000 \times 130,000,000}{130,000,000 + 70,000,000}$ = 10,500,000원	$\frac{50,000,000 \times 130,000,000}{130,000,000 + 70,000,000}$ = 32,500,000원 $\frac{50,000,000 \times 130,000,000}{130,000,000 + 70,000,000}$ = 17,500,000원
p.959 상5 상7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 공제한도는 3천만원이고, ~ 3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한도는 5천만원이고, ~ 5천만원이

2014년 세법학 2부 수정표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p.160 하9 하7 하4	• 금액을 • 과세표준×50% • <추가>	•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 과세표준×50% ^{주1)} • 주1) 2015.12.31.까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경우 60%
p.190 하9	공제율 1.6%	공제율 1.3%

p.865 도표 기업상속공제 부분 “적용요건” 삭제, “공제금액” 수정

기업상속공제	<삭제>	Min[가업재산가액, 한도액]
--------	------	------------------

p.962 증여세계산 관련 예제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0,000 → 50,000,000”으로 변경하여 세액계산



풀이

(단위 : 원)

증여시기	2014.3.5. 증여분	2014.4.7. 증여분	2014.5.12. 증여분	2014.6.2. 증여분
증여자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
합산대상증여재산			300,000,000	
증여세과세가액	15,000,000	300,000,000	900,000,000	700,000,000
증여재산공제	15,000,000	35,000,000	35,000,000	600,000,000
감정평가수수료공제			5,000,000	
과세표준		265,000,000	860,000,000	100,000,000
산출세액		43,000,000	198,000,000	10,000,000
증여세액공제			43,000,000	
신고세액공제		4,300,000	15,500,000	1,000,000
납부세액		38,700,000	139,500,000	9,000,000



1. 2014년 4월 7일 증여분

- (1) 증여세과세가액 : $350,000,000(\text{시가}) - 50,000,000(\text{차입금}) = 300,000,000\text{원}$
- (2) 증여재산공제 : 35,000,000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 15,000,000원이 차감되었으므로 잔여분만 추가로 공제
- (3) 산출세액 : $10,000,000 + 165,000,000 \times 20\% = 43,000,000\text{원}$
- (4) 납부세액 : $43,000,000 - 43,000,000 \times 10\%(\text{신고세액공제}) = 38,700,000\text{원}$

2. 2014년 5월 12일 증여분

- (1) 증여세과세가액 : $600,000,000 + 300,000,000 = 900,000,000\text{원}$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과세가액 300,000,000원을 가산
- (2) 과세표준 : $900,000,000 - 35,000,000 - 5,000,000 = 860,000,000\text{원}$
- (3) 산출세액 : $90,000,000 + 360,000,000 \times 30\% = 198,000,000\text{원}$
- (4) 증여세액공제 : Min[①, ②]
 - ① 43,000,000원(증여세산출세액)
 - ② $198,000,000 \times \frac{265,000,000}{860,000,000} = 61,011,627\text{원}(\text{한도액})$
- (5) 신고세액공제 : $(198,000,000 - 43,000,000) \times 10\% = 15,500,000\text{원}$
- (6) 납부세액 : $198,000,000 - 43,000,000 - 15,500,000 = 139,500,000\text{원}$